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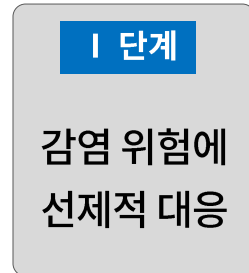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·근로자 보호 가이드

-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중심으로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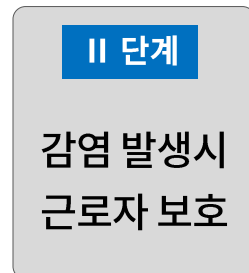


대한상공회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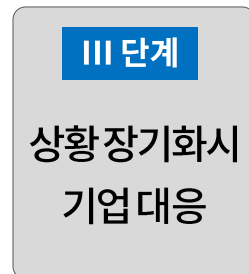
목 차



- 1**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
- 2** 재택근로제·시차출퇴근제 실시
- 3** 감염우려 근로자 발생시 조치



- 4** 확진자·격리 대상자 보호
- 5** 방역 등을 위한 사업장 일시 폐쇄
- 6** 근로자 가족 돌봄 지원



- 7** 업무·생산계획의 유연한 조정
- 8** 휴업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
- 9** 일시적 임금체불 상황에 대응

1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

기본 상황

- 코로나19 감염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
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

조치 사항

①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

- 근로자·방문객 대상 개인위생관리 및 사업장 청결·방역
 - 손세정제 또는 손소독제, 일회용품 등 위생관련 물품 비치
 -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부착
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홈페이지(<http://ncov.mohw.go.kr>) 자료 참고

② 업무상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

-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있을시 출근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료 받도록 사전교육
- 불필요한 출장 자제, 대면 회의·교육 등은 가능한 화상으로 대체
-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(가급적 휴가, 재택근무 활용 등)

※ 사업장내 감염관리 및 감염병 환자 발생시 대응 관련 자세한 사항은
고용노동부의 ‘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’ 참고

2 재택근로제·시차출퇴근제 실시

기본 상황

- 사업장내 근무 밀집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근로자의 근무 시간·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경우

조치 사항

① 근무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재택근무제 또는 원격근무제 실시

⇒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 가능  [참고①/②\(5,6page\)](#)

재택근무제	▪ IT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
원격근무제	▪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

② 근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시차출퇴근제 또는 선택근무제 실시 ⇒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 [참고①\(5page\)](#)

시차출퇴근제	▪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
선택근무제	▪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 조정 (1개월 한도)

3 감염우려 근로자 발생시 조치

기본 상황

-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로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염우려 근로자*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할 필요

* 발열·호흡기 증상, 해외출장, 감염시설 방문 등

조치 사항

① 일정기간 휴가 부여

- 사업주 자율 판단인 만큼 별도의 ‘유급 휴가’ 부여 가능
- 이 경우, ‘감염병예방법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 신청은 불가
- 휴가기간은 의심 상황 발생시기 등을 감안해 적절히 판단할 필요

②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‘재택 근무’도 가능할 것

- 다만, 근로자 선택 사항인 만큼 강요는 부적절
- 재택 근무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신청 가능 👉 [참고①\(5page\)](#), [참고②\(6page\)](#)

참고① 유연근무제 도입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

지원 근거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(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)

지원 대상

-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* 또는 중견기업일 것
* 500인 이하 제조업, 300명 이하 건설·운수업, 200명 이하 도소매·음식숙박업 등
-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통해 유연근무제(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·원격근무) 도입
-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원 특례
 - ①요건 완화 :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 방식에 의한 도입시에도 지원
 - ②대상 확대 : ‘채용 후 1개월 미만 근로자’, ‘신청일 이전에 유연근무제 활용한 근로자’도 지원

지원 수준

- 지원금액 : 근로자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20만원

기준	연간 총액		1주당 지급액	
	주 3회 이상	주 1~2회	주 3회 이상	주 1~2회
지원금액	520만원	260만원	10만원	5만원

- 지원한도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한도. 최대 70명 지원(단, 시차출퇴근제는 50명)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0

참고②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

지원 근거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(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)

지원 요건

-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
- 재택·원격근무 활용 위해 지원대상 프로그램·시설·장비를 설치하는 경우

지원 대상

- 그룹웨어, 원격접속,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
- 네트워크 보안,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
- 취업규칙 변경,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
- 인사담당자 교육·훈련 비용
- 클라우드 사용료, 인터넷 통신료 등

※ PC·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비용은 지원 제외

지원 수준

-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1/2 한도내 최대 2천만원 지원

*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6/10~8/10로 지원비율 상향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0

4 확진자·격리 대상자 보호

기본 상황

- 소속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(밀접접촉자 등 포함)로 판정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

조치 사항

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

-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
 -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‘유급 휴가’를 부여
 - 병가 규정이 없거나 무급인 경우 ‘무급 휴가’ 또는 ‘연차유급휴가’를 사용할 수 있음
 - * 단,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을 강제하지 못함
- 관련규정 없어도 사업주 판단으로 ‘유급 휴가’ 부여 가능
 - 유급 휴가 부여 시 ‘감염병예방법’에 따라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[☞ 참고③\(8page\)](#)

② 부득이 무급 휴가인 경우 ‘생활지원비’ 신청을 안내

- 무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‘생활지원비’ 신청이 가능 [☞ 참고④\(9page\)](#)

③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여부 판단

- 코로나19 확진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[☞ 참고⑤\(10page\)](#)

지원 근거

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

제41조의 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지원 대상

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*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*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
지원 내용

■ 지원 기준 :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*으로 지급. 1일 상한액은 13만원

*격리 ·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÷ 26일

■ 지원 기간 : 입원·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

■ 지원 금액 : 1일 과세급여액(최대 13만원) × 유급휴가 기간

신청 방법

■ 신청 기관 : 국민연금공단 지사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5

지원 근거

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

제70조의4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지원 대상

■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

* 단,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

지원 내용

■ 지원 금액 :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

(단위: 원/월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생활지원비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
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

신청 방법

■ 신청 기관 :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29

지원 대상

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

- 업무특성상 감염위험이 있는 직업군에 해당하거나

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

*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

인정 대상	인정 요건
•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·항만등의 검역관 • 중국 등 고위험 국가(지역) 해외 출장자 •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 탑승한 자 •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•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	•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•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•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

지원 내용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

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 등을 지급

* 산재요양 중 산재요양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 해당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지급

신청 방법

■ 신청 기관 : 근로복지공단 지사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588-0075

5 방역 등을 위한 사업장 일시 폐쇄

기본 상황

- 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하여
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방역이 필요한 경우

조치 사항

- ① **사전조치**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·선제적 방역
 - 사업주 자체판단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(평균임금의 70% 이상) 지급할 의무 발생
- ② **상황발생시** 보건당국 결정에 따른 폐쇄 및 방역
 - 관리직·연구직 등의 경우 → 다른 사무실 근무, 재택근무, 연차유급휴가, 임시휴업 등이 가능
생산직·판매직 등의 경우 → 연차유급휴가 또는 임시휴업 불가피
*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
 - 임시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음.
다만,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‘유급 휴가’를 권고
- ③ **추가조치** 방역 후, 필요시 사업주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 연장 가능
 - 사업주 판단인 만큼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 발생
 -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 가능

6 근로자 가족돌봄 지원

기본 상황

-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
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 휴교(원),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

조치 사항

① 다양한 방법의 가족돌봄이 가능함을 안내

- 근로기준법상 ‘연차 유급휴가’ 사용 가능
- 남녀고용평등법상 ‘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*’ 사용 가능
 - * 고용노동부, 정기근로감독시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 집중 점검 예정
-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·재택근무제 시행중인 경우 해당 제도 활용 가능

가족돌봄 휴직
• 대상 가족 : 조부모·부모·배우자·배우자부모·자녀·손자녀 • 돌봄 기준 : 질병·사고·노령 • 사용 기간 : 연간 최장 90일, 1회 최소 30일 이상 • 불가피한 경우 휴직 부여 않을 수 있음

가족돌봄 휴가
• 대상 가족 : 원칙적으로 ‘가족돌봄휴직’과 동일 • 돌봄 기준 : 질병·사고·노령 ·자녀양육 • 사용 기간 : 연간 최장 10일,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 • 불가피한 경우 협의해 휴가시기 변경 가능

② 가족돌봄휴가 부여시 ‘정부 긴급지원 신청’이 가능함을 함께 안내 [☞ 참고⑥\(13page\)](#)

- 단, 회사가 유급으로 돌봄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 불가

참고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

지원 근거

- **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**(2/28, 경제활력대책회의)

지원대상

- **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*
 -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·의사환자·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
 -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의 휴업 및 개학 연기

※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지원 제외

지원 기간

- **2020.1.20~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** (한시적 지원)

지원 수준

- **1인당 일 5만원, 최대 5일간 지원**(부부 합산 최대 50만원)
 -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- **고용노동부 홈페이지**(www.moe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5

7 업무·생산계획의 유연한 조정

기본 상황

- 코로나19상황이 계속됨에 따라
근무시간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

조치 사항

① 특별연장근로제 적극 활용

 [참고⑦\(15page\)](#)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
- 방역 및 사업장 폐쇄 등 돌발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
- ※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및 승인 필요

② 지속적인 상황이라면 탄력·선택근로제 도입 검토 [참고⑧\(16page\)](#), [참고⑨\(17page\)](#)

- 수급문제 장기화 등으로 생산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
- 휴가자·격리자 증가로 인력운용에 수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가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활용
- ※ 근로자대표(노조)와의 사전서면합의 필요

참고⑦ 특별연장근로 인가

제도 개요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

인가 요건

-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+ 대상 근로자 동의 받을 것 + 건강권 보호조치

특별한 사정	① 재해·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·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+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·손해 ⑤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
건강권 보호	[공통]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및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른 휴가의 부여 등 조치 [추가] 특별한 사정 ④호·⑤호의 경우 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4주 연속 이상 지속될 경우 ①1주 8시간 이내 추가연장 ②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③1주 1일이상 연속휴식 보장

인가 내용

- 인가 기간 : 4주 이내 (단, ⑤호 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 이내)
*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
- 인가 시간 : 1주 12시간의 범위내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관할 고용노동지청 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0

제도 개요

- 일이 많은 주(週)·일(日)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주·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(주40시간)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

유형 및 도입 요건

- 2주단위 탄력근로제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중 기업 실정에 따라 도입

유형	2주 단위 탄력근로제	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
도입 방식	• 취업규칙 변경(근로자 과반수 동의)	• 근로자대표(또는 노조)와 서면 합의
대상근로자	• 전체 또는 사업·직종별 선별 적용가능	• 전체 또는 업종·직종별 선별 적용가능
근로일별 근로시간	•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규정	• 합의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에 정할 것
근로시간	• 1주 48시간 넘지 않을 것	• 1주 52시간·1일 12시간 넘지 않을 것
유효기간	• 유효기간 명시 의무 없음	•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명시할 것

연장 근로

- 탄력근로제 적용과 별도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연장근로 가능

* 2주 단위 탄력근로제下 1주 최장 근로시간 : 60시간 (탄력 48시간 + 연장 12시간)

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下 1주 최장 근로시간 : 64시간 (탄력 52시간 + 연장 12시간)

제도 개요

- 일정기간(1월 이내)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
 - ✓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없이 근로 가능

도입 요건

-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것
- 아래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할 것
 - 대상근로자 범위
 -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및 총 근로시간
 -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(의무근무시간) 및 근로자 결정에 따르는 시간대(선택근무시간)
 - 유급휴가 부여의 기준이 되는 1일 표준근로시간 (ex. 8시간)

연장 근로

- 선택근로제 적용과 별도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연장근로 가능
 - *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

8 휴업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

기본 상황

-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매출이 감소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

조치 사항

- ① **확진자 발생 등으로 사업장 폐쇄(휴업)가 불가피한 경우**
 -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에 따른 휴업 : 해당기간 무급휴가 처리 가능(고용노동부 지침)
 - 사용자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 : 평균임금의 70% 휴업수당 지급
- ② **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**
 - 사업주 판단하에 전체 또는 일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
 - *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 가능
 - 근로자와 협의를 통한 ‘근로시간 단축’ 및 ‘무급휴직’ 등도 가능
- ③ **고용유지 목적의 휴업 등의 조치시 ‘고용유지지원금’ 신청 가능**  [참고⑩\(19page\)](#)

참고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

지원 근거

- 고용보험법 제21조(고용조정지원)

지원대상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
 -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%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
 - 코로나 피해 업종은 재고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
-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
 - 적용대상 :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 등 4개 업종
 - 적용기간 : 2020. 3. 16 ~ 9. 15(6개월간)

지원 요건

- 휴업(완전 휴업 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% 초과 휴업) 또는 휴직(1개월 이상)을 실시할 것

지원 수준

-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 지원

유형	일반 고용유지지원	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
지원수준	• 우선지원대상기업 2/3, 대기업 1/2 ※ 2/1~7/31간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 (우선지원대상기업 3/4, 대기업 2/3) • 1일 6.6만원(연 최대 180일)	• 우선지원대상기업 90%, 대기업 2/3~3/4 • 1일 7만원(연 최대 180일)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(기업지원과) 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0

9 일시적 임금체불 상황에 대응

기본 상황

-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
일시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

조치 사항

① 자금 부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용자

-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‘사업주 융자제도’ [☞ 참고⑪\(21page\)](#)
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‘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도’ 활용 [☞ 참고⑫\(22page\)](#)
- 다만, 일시적인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시기 조정도 가능할 것

② 임금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
-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‘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’ 활용 안내 [☞ 참고⑬\(23page\)](#)

참고⑪ 체불청산 지원 사업자 용자 제도

지원 근거

-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(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용자)

지원대상

- (사업주)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서
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 사업장
- (근로자) 6개월 이상 근무하고
신청일 현재 재직근로자이거나 1년 이내 퇴직한 자

지원 수준

- 용자금액 :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,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
- 용자방식 : 용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, 담보제공 필요
- 이 자 율 : 신용용자 또는 연대보증 연 3.7%, 담보제공 연 2.2%
- 상환방식 :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근로복지공단 지사
☞ 문의처 (국번없이) 1588-0075

참고⑫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

지원 목적

- 코로나19 사태 소비위축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지원

지원대상

- 음식·숙박·도소매·운송 등 피해업종 중 전년 대비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기업
- 중국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

지원 수준

- 융자금액 :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
- 융자방식 :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·평가 후 대출
- 대출금리 : 1.5%
- 상환방식 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관 : 소상공인진흥공단
☞ 문의처 (국번없이)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

지원 근거

■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

제19조(생활안정자금의 지원)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지원 대상

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근로자 *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

※ 코로나19 관련 2020.7.31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기준을 ‘月259만원 → 月388만원’ 완화

지원 내용

■ 융자종류 및 한도 : 1인당 최대 2,000만원 한도 *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가능

임금체불 생계비	소액생계비	의료비	자녀학자금	부모요양비	혼례비	장례비
최대 1,000만원	200만원	최대 1,000만원	1,000만원 (1인당 500만원)	1,000만원 (1인당 500만원)	최대 1,250만원	최대 1,000만원

■ 융자조건 : 연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
신청 방법

■ 신청 기관 :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신청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588-0075